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윌일	2019. 9. 11.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6호 제출연월일: 2019. 9. 11. 제 출 자: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 보상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 규정 표준화(안 제8조제10항)
- 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다.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신설(안 제15조제2항 별표)
- 라.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 신설(안 제15조~제17조 별지제7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3조의3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반영
 - 별지 제3호서식(활동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단원활동현황 총괄 표)의 경우 자율방재단원의 실제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이들 서식내 '성별 기재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재단 중 성별 활동현황과 활동내용 등을 파악하기에 제약이 있어 <u>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도 '성별'칸을 마련할 것</u>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함

- (3)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2019. 8.9. ~ 2019. 8.2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자연재난과

□ 개정조례안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논산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① 논산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

원으로 할 수 있다.

-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⑥ 읍·면·동 자율방재단원은 시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자율방재단 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⑦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다.
 - ② 단장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⑤ 읍·면·동 대표는 해당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단원이 논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5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논산시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전개
 -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앢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수 있다.
-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논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다.

-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단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 는 것으로 해당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자문위

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보상하도록 한다.
 -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 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 ②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한다.
- 제19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로 임명 또는 지명(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 또는 지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대표는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대표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소 관	성		명		
입	안 전] 총괄.	과 장	박	기	연
안	복구	시지 원	팀장	조	정	구
자	담	당	자	양 (74	선 6-63	응 42)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	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	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	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및 등급에 관하
신체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여는 「의사상
등급별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자 등 예우 및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지원에 관한 법
장해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률 시행령」 별
보상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표 1을 준용한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다.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위촉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논산시 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 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논산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5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2	<u>ک</u>					일반전	전화		
	소					휴대전	선화		
자 격 또는 <i>기</i>	-		운전가능 (면허종						
_	_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	동했던 내용	을 정히	기				
제 ' 현장경	난 ! 험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 체적으로 정리	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i>,</i> ㅊ	나랑통제	, 인명구3	조 <i>,</i> 장비지원	! .등 구
-1 -1	_1	제경으로 경되							
희 활동내	망 용	※ 본인의 🧷	기능 등을 활	할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	·항]								

상기 본인은 논산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논산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논산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드로비충	•
궁독반오	•

단체 명			대 3	포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스	l 명		
인 원		남 〇〇명	여 0	○명 총'		등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명(규격)) O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〇〇명 여 〇〇명	장비(i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지원, 차형	왕 지원	등 구체적으	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논산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논산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성 명	(인) 성 별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사 유	※ ○○태풍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_/ 장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	장 소	※ ○○읍·!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응을 구체적으							
	내용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ма теч	400 00/10 0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〇〇읍(면동)대표 성 명 (인)										

본인은 논산시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2-J 1-H	<i>ਮ</i> ੇ ਮੀ	활 동 상 황		ul –
등록 번호	성 명	성 별	횟 수	시 간	비 고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연 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호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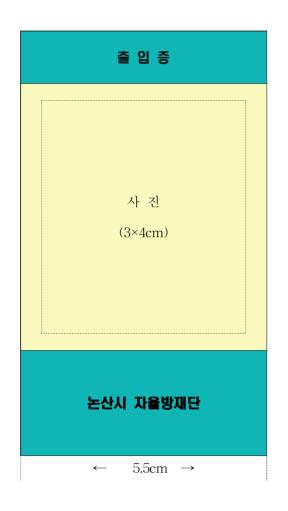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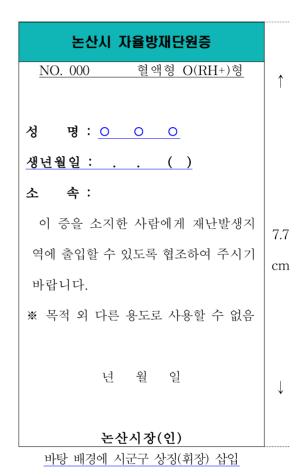
[논산시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0 0	
2		
3		
4		
5		
6		
7		
8		
9	0 0	
10	0 0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 OO시·군·구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별지 제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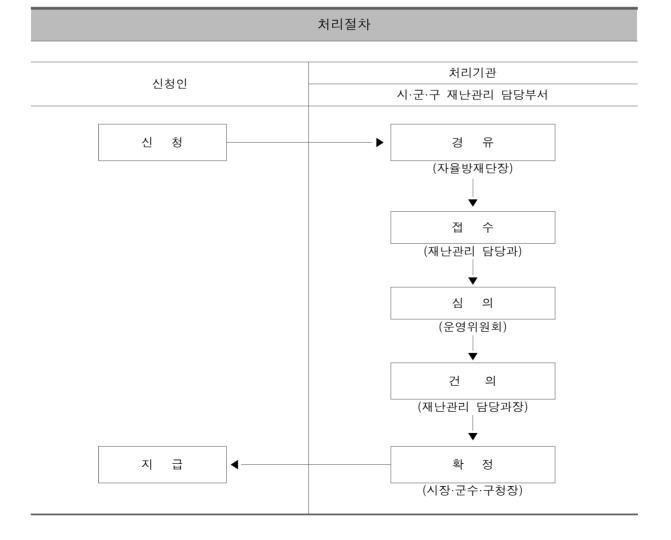
	·		, 유족 [] 보상정구시 				
	너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선고입구 구 접수번호	<u> 세울시ㅠ 또한기신는 지니기신에^</u>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소속		전화번호				
사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사고경위						
및 요양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요양보상		장해보상				
청구금액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다	내책법 시행규칙」 제27조	의3에 의거 위	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	다.			
			년	월 일			
	ż	J구인 :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	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	너명 또는 인)			
○○재닌	· 관리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m²(재활용품)]			

		(뒤쪽)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ᅰᆃᅬᄅ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제출서류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수수료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없 음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담당공무원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확인사항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u> <u>관한 조례</u>	<u>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u> <u>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 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u>제65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논 산시 <u>지역자율방재단</u>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제65조에 따</u> <u>라 가</u> <u>율방재단의</u>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논산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논산시 지 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u>방재단은</u> 단장 1 인, 부단장, 간사 1명 및 단원 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 식과 경험이 있는 <u>자로서</u> 단원 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 라 한다)이 <u>위촉 또는 임명한</u> 다.	제2조(조직) ① 논산시 자율방재 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 ④ 간사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 한다.(개<u>정 2016.10.31)</u>
-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 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 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논산시 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 인 · 단체 · 기업체 · 기관 · 학 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 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⑦ 생 략
- ⑧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자율 원은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 이 되며, 논산시 방재단장의 지 휘에 따른다.
-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읍· 면ㆍ동 단원이 호선하여 선출한 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 ①~② 생 략
-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 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 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 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 으로 할 수 있다.

- ⑤ (현행 제7항과 같음)
- ⑥ 읍·면·동 자율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⑦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⑨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 (이하 "대표" 라 한다) 학식과 | 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 출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 ①~② 현행과 같음

임무를 대행한다.

- ④ 생 략
-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 능하다.
-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 제4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 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 될 경우 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 않는 경우
 -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 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2. 단원이 논산시 이외의 지역 경우

-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단장의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
 - ④ 현행과 같음
- ⑤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 ⑤ 읍·면·동 대표는 해당 읍·면· 동 자율방재단을 -----
 - ⑥-----읍·면·동 대표의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 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 지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원이 논산시 외 지역으로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
- __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 통해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 __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 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 제6조(임무) ① ------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할 수 있다.

-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1.~8. (생략) <신 설>
- 9. (생략)
-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발 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 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 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 서 결정한다.
- ④ (생략)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 -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 다음 각 호
 - 1.~8. (현행과 같음)
 -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 악
 -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③ -----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 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 는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 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 소집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u>소집방법</u>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③ (생략)

제9조(운영 등) ① (생 략)

-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u>매반기</u>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u>"단원 활동현황 총괄표"</u>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u>단계시</u> 논산시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 실(이하"종합상황실"라 한 <u>다)</u>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u>종합상황실</u>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u>소집 방법</u>
<u> </u>
뜻-
<u> </u>
③ (현행과 같음)
<u>제8조</u>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매월</u> -
원활동현황 총괄표"
③ (현행과 같음)
④
단계 시 논산
시 재난종합상황실
<u>, 기단이비이하면</u>
개나종합상

황실 -----

----- 시장----

대해서는 <u>재난안전대책 본부장</u>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u>종합상황실</u>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
- ⑥ <u>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u>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 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 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⑦ 단장은 매년 <u>7월말</u>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 식에 <u>의거</u>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 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논산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실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
⑤ <u>재난종합상황실</u>
⑥ <u>단원이 합동</u>
 ⑦ <u>11월말</u> 따
<u>라</u>
<삭 제>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
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1
<u>한</u>
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
용에 픽요하 유류대 및 잣비

사용료 --

-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3. 4. (생략)
-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 용,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 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6. (생략)
-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 7. ---- 운영비, 활동 관련 물 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 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비용

<신 설>

<신 설>

제10조 삭제 (2016.10.31.) <신 설>

2	
	다
만,	
<u> 가입되어</u>	
3. • 4. (현행과 같음)	
5. 단원	

- 6. (현행과 같음)
- 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 비용 -----
-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u>제11조</u>(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u>출</u> <u>입시</u>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 다.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 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 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u> </u>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
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
<u>손되는 행위</u>
<u>제10조</u> (출입증 발급) ①
출입 시
··
② <u>u</u>
<u>라</u>
제11조(교육) ①
한다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④ (생 략)

-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 정에 대한 심의 ·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를 단장. 부단 장, 읍면동 대표, 민간단체 대 표를 협의회 인원으로 하되, 5 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 구성인원 3명 이상의 건의에 의

<신 설>

하여 소집 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생 략)

<신 설>

제13조(훈련) ① 훈련은 시장이 제12조(훈련) ① ---- 방재단 자 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단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실시하는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② -----2시간-----

제5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

및 정책-----산시 자율방재 협의회(이하"협 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 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 집할 수 있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 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 되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 를 입은 날
-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 다.

<u>제15조</u>(중앙지원단 자문 등) (생 략) <<u>신 설></u>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신 설>

<신 설>

있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 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 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 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 설>

-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 빙서류 등을 -----한다.
 -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 금에 대하여 <u>연 2회 이상 지</u> ----- <u>지도·감독</u>----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생략)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화수) 시장 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 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에는 환수조치 한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제14조(감독) ① ------ 자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마다 | 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

(<u>2</u>) -----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붙임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O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O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이는 어려움.

4.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박기연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

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 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 3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양보상
- 2. 장해보상
- 3. 장제보상
- 4. 유족보상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OO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OO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군·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⑦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하다.
 - ② 단장은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⑤ 읍·면·동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단원이 시·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OO시·군·구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군수·구청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수 있다.
-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 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비용
-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참고 3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등록 (인) ※ 서식2의 등록번호 명 번호 사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유 방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법 ㅇㅇㅇㅇ년ㅇㅇ월ㅇㅇ일 부터 시 ~ ○○○○년○○월○○일 까지 (○○시 간 활동 장 내용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소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내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용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명		(인) 성별	등록 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사 유	※ ○○태풍, ○○지·		,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흴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	시 간	0000년00월 ~ 0000년0 간)	_ ,	'					
내용	내용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에) ㅇㅇ지역 사전	[예찰 00시	간,					
	내 용	○○마을 차량	· 양통제, 00시	간					
		○○지역 주민	U대피방송 (00시간 등					
[건:	 [건의사항]								
※ 활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〇〇읍(면동)대표 성 명(인)								

[별지 제4호서식]

단원활동현황표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인)

두로			활 동	· 상 황	
등록 번호	성	명	횟 수	시 간	비고
1					
2					
3					
:					

[별지 제4호서식]

단원활동현황표

드로			활 동	활 동 상 황		
등록 번호	성 명	성 별	횟 수	시 간	비고	
1						
2						
3						
:						

위촉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00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00시장·군수·구청장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	성	뗭	○○○(성별)	연 령				혈액	형		
	주	人					일반진	선화			
·	丁	소					휴대전	선화			
		역 증 기능		운전가능 (면허종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	통했던 내용	을 정:	।					
	재 년장	난 경험	에) ○○재난현장에서 구호	물품 전달,	이재민	! 구호, ㅊ	다량통제	, 인명두	구 조,	, 장비지원	.등 구
			체적으로 정리								
	희 활동	망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 -	들이	사항]									

상기 본인은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표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
담 당	자	○ ○ ○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〇〇명	여 0	○ 명	30	÷인원	0 0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			명(규격)) O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기	능	남 00명 여 00명	장비(i](규격)) O 대	장비(규격) 〇〇대
전문분	<u> </u>	※ 단체의 성격 정리에)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	뿡지원	등 구체적으	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에) ○○지역 사전에찰 00시간 <i>,</i>						
	내 용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						

본인은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번호	78 5	횟 수	시 간	11 77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호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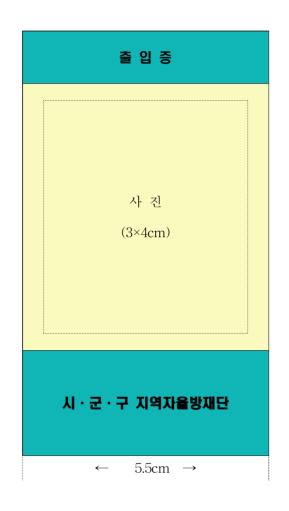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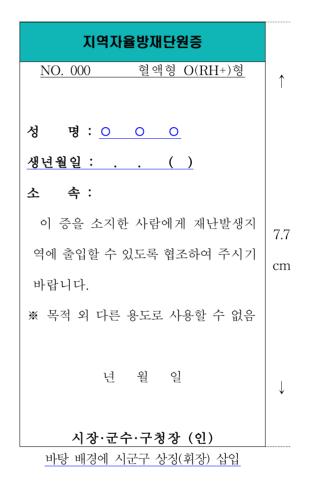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0 0	
2	0 0	
3	0	
4	0 0	
5	0 0	
6	0 0	
7	0 0	
8	0	
9	0	
10	0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 OO시·군·구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샹 [] , 상해 [] , 상제 [] ,	
	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소속	전화번호
사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사고경위	
및 요양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요양보상	장해보상
청구금액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디	□ ㅐ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	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	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재난	관리과장 귀하	

		(뒤쪽)_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ᅰᅕᆡᄅ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제출서류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수수료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없 음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담당공무원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확인사항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